

◆ 政府 施策 ◆

『新경제 5個年 計劃』 에너지 및 資源開發戰略 部門

—電力部門 發展비전과 政策方向—

- 發電設備 最適 擴充으로 전력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 民資發電 허용으로 발전사업의 競爭기반 조성
- 전기요금 구조개선으로 需要管理 강화
- 송전전압 격상으로 송배전설비 效率性 제고

가. 電力의 安定供給基盤 擴充

(1) 發電設備의 最適 확충

- 계획기간중 27기의 신규발전소 준공(92 : 24,120 → 97 : 36,160천KW)

	원자력	유연탄	LNG	수력	계
· 기수	3	12	7	5	27
· 용량(천KW)	2,700	6,120	2,950	723	12,493

(2) 投資財源의 적기조달

- 適正 투자보수율 유지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자체자금 조달능력 제고
- 電力債 발행 등을 통한 외부자금 적기 조달

(3) 新規立地의 적기확보

- 發電所周邊地域 支援制度 개선
 - 지원규모의 점진적 확대
 - 所得增大 및 育英事業 위주로 지원사업 전환
- 도서지역 이용 및 공유수면매입등 立地確保 방법의 다양화
- 新都市 및 대규모 工團造成時 발전소입지 동시 확보

나. 民資發電 허용

- 민간기업이 발전소를 建設·所有·運營하고,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 판매
- 대상전원은 원자력을 제외한 유연탄, LNG, 수력으로 함
 - 93년 말까지 長期電力需給計劃樹立과 연계하여 민자대상 발전소 선정
- 전력구입 가격은 한전의 類似發電所 發電原價를 기준으로 산정
- 외국인과의 合作投資는 50% 범위내에서 허용
- 電力事業의 독점체제 개선방안 검토

다. 需要管理 위주로의 料金構造 개편

- 계절별·시간대별 差等料金制 강화
 - 고율의 요금이 적용되는 하계 및 주간시간대를 단축
 - 주간·저녁·심야시간대 간의 料金差等幅 확대
- 電氣料金體系의 합리화
 - 기본요금 비중의 점진적 상향조정
 - 사용시간에 따라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을 차등적용하는 選擇料金制 도입
 - 원가 이하 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산업용, 농사용 등)

라. 送配電施設의 효율성 제고

- 송전 전압의 단계적 격상 추진 ($345\text{KV} \rightarrow 765\text{KV}$)
- 配電設備 現代化를 위한 배전시스템 자동화 추진

마. 電力技術의 해외진출 적극추진

- 분야 : 발전소, 송배전 건설 및 운전기술 등
- 국가 :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지역

民資發電所 연내 선정 —외국인投資 '97년부터 50%內 허용—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민간기업이 건설·소유·운영하는 民資발전소를 건설 키로 하고 연내에 대상 발전소를 선정키로 했다.

또 民資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이 민자발전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입 토록 보장해 주고 오는 '96년말까지로 되어있는 발전설비 일원화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97년부터 합작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가 마련한 '발전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허용방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참여범위는 발전소를 건설·소유·운용하되 생산전력은 전량 韓電에 판매토록하고 발전원은 원자력을 제외한 유연탄·LNG복합·수력등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정했다.

民資발전규모는 2천년대 초에 준공될 유연탄, LNG복합발전소 1-2기부터 시작,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되 구체적인 대상발전소는 금년말까지 수립예정인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서 정하되 단위기의 설비용량은 일정수준이상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전력요금은 설비용량과 건설시기, 연료원등이 유사한 韓電발전소의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참여사업자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키로 했다.

외국인의 투자도 97년부터 허용하되 투자비율은 50%미만의 범위에서 국내기업과 합작 투자토록 하고 韓電과 민간기업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 및 금융면에서 공정한 경쟁조건을 부여토록할 계획이다.

또한 民資발전을 적극 지원키 위해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을 개정, 각종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재원확보 지원방안등을 강구하는 한편 民資발전소에 대해서는 '96년말까지로 되어있는 발전설비 일원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와 함께 민자발전사업의 건실성을 확보키 위해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韓電이 民資발전의 이용률(구입전력량)을 일정수준 이상 보장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방대한 규모의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부담을 줄이고 발전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 전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기업의 설계·제작·시공능력을 향상시켜 해외진출을 촉진키 위한 것이다.

한편 民資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삼성중공업과 현대건설, 한일개발, 럭키개발 등이 참여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수자원공사를 포함, 28개사로 이들업체의 설비용량은 국내총발전설비의 12.1%인 314만5KW에 달하나 순수 민자발전은 '72년에 준공된 한국화약그룹의 경인에너지(32만5천KW) 하나뿐이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조정

—財務部, 예산회계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재무부는 정부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입찰·계약업무와 관련된 규제사항을 완화하는등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1. 개정(안)주요내용

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조정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조정

- 일반공사 : 20억 원이상 → 100억 원이상
 - 전기·전문·전기통신·소방공사 및 특정 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 : 3억 원이상
→ 10억 원이상
 - 용역 : 3억 원이상 → 10억 원이상
- ※ 상기이외의 공사 및 용역은 제한적최저가 낙찰제 적용

나. 덤핑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억제

-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를 설계변경(계약금액 증액)할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 장의 사전승인을 필수요건으로 함.
- 다. 설계자 및 그 계열기업도 공사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라.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하여는 차액보증금중 예정가격의 85%상당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대입찰제 도입

예정가격이 100억 원이상인 공사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하도급부분,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자 예정자를 산출내역서에 따로 기재토록 함.

바. 대가지급지연이자 면제제도 폐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대가, 기성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도 대가지급지연시 이자를 지급토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무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장, 500-53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對日수출有望 37品目선정

—商工部, 對美·中 유망품목도 발굴키로 —

상공자원부는 對日수출유망품목으로 반도체 등 37개 품목을 선정, 이들 품목에 대해 해외시장개척기금을 우선 지원하는등 수출촉진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수출이 200만 달러 이상인 주요품목중 최근 3년간 對日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日本 수입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품목 37개를 찾아내 對日수출확대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총 1천억원규모로 조성할 계획인 해외시장개척기금의 지원시 이들 對日수출유망품목 수출업체를 우대토록 할 계획이다.

또 품목별 對日 주요수출업체에 대해 수출애로사항을 중점관리, 개선책을 수시로 강구하고 貿易協會와 貿公, 종합상사등에 대해 품목별 세일즈맨단 파견과 순회전시회 개최등 對日수출촉진방안을 강구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의 對日수출은 4월말 현재 총 16억2천만달러로 전체 對日수출의 47.3%를 차지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번 對日수출유망품목 발굴에 이어 對中國 및 對美수출 유망품목도 6-7월 중 발굴, 수출촉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對日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중 전기전자는 반도체·자기헤드·영상기기(TV·VTR)·가정용기기(냉장고·에어컨 등)·유선통신기기·컴퓨터·전자관 및 동부품·자기테이프 및 동부품·축전지 및 동부품 등 9개품목이다.

◎ 對日 수출 유망품목 (축전지 및 부분품)

(백만불, 억엔, %)

구 分		'91.	'92.	'93.1-4	주 요 특 징
대일수출	축전지 및 부분품	8 (-11.3)	12 (49.4)	3 (30.5)	• 작년 4/4분기부터 수출이 호조
일본수입 점유율	전체 수입	95 (26.6)	93 (-1.9)	25 (12.0)	• 금년들어 일본수입이 회복
	· 한 국	12.3	12.5	14.3	• 주수출국은 미국이며 우리 수입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주요수출 업체			델코전지(주), 그로벌유아사 전지(주)		
			국내 생산업체		

先導技術개발사업 540억 支援 —7월 20일까지 申請접수—

신의약 및 신농약개발사업, 첨단생산시스템개발사업등 차세대제품기술 2개사업에 대해 216억원이 지원되는등 '93년도 선도기술개발사업에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선진 7개국 수준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의 2차년도인 '93년도 추진계획'을 과기처·상공부·체신부·환경처·보사부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은 G7프로젝트 11개 사업중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기술, 차세대자동차기술, 신기능생물소재기술 및 환경분야등 원천기반기술 4개사업을 비롯 모두 6개사업이다.

사업신청서는 7월 20일까지 받는다.

초고집적 반도체 및 광대역 ISDN, 신에너지기술은 별도 계획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고된 사업의 정부지원연구비 규모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구 분	정부지원연구비	지원과제수
◦ 신의약·신농약	110	40개
◦ 첨단생산시스템	106	10개 (42개 소과제)
◦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	80	15개
◦ 차세대 자동차	124	30개
◦ 신기능생물소재	50	9개
◦ 환경공학	70	17개
계	540	111개

關稅減免 물품 事後管理기간 短縮

—關稅廳 改正고시—

관세청은 현재 5년(또는 3년)으로 돼 있는 첨단기술산업용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 품, 공장자동화기기, 제조용원재료등 減免물품에 대한 세관의 사후관리기간을 3년으로 2년 단축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 첨단기술산업용 시설기계류와 기초설비품, 공장자동화기기, 지하철도용품, 연구개발용 기자재등과 운동용구와 같은 특정물품은 3년 ▲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제조용원재료는 제조완료 ▲ 소모성 연구개발용품은 사용완료 확인일로 사후관리를 끝내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연구개발용 소모성자재 및 원재료등 용도외사용 가능성이 적은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용도대로 설치·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사후관리를 종결하게 된다.

이는 최근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데 따라 국내 製造 및 研究開發 관련 시설의 改替등이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첨단기술산업의 투자지원 및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6월 22일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은 물론 종전의 감면용도 不使用금지기간, 用途外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금지기간 등이 변경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첨단시설 투자등에 대한 업체의 사후관리 부담이 줄게돼 신기술 개발등에 따른 기술도입, 시설개체, 합리화등 움직임이 한층 가벼워지고 세관의 사후관리부담도 덜게 됐다.

우리나라는 △ 첨단기술산업 육성 △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 사회복지 증진 △ 지하철도 건설지원 및 外資유치등을 위해 기업체·연구기관등에서 첨단기술산업용 설비나 연구기자재 등 수입시 관세를 免除 또는 輕減해 주는 대신 용도외사용 가능성이 적은 연구개발용 시약, 소모성물품, 반도체제조용 설비등 일부를 제외하고 減免목적대로 사용 되는지를 세관이 5년동안 사후관리해 왔다.

▲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용도외사용 금지기간등

일련 번호	물 품	감면용도 불사용 금지기간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금지기간
1	관세법 제28조 해당물품 가. 금 형 나. 기호 해당외의 물품	1년 1년	2년 3년
2	관세법 제28조의 3제1항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5년 1년	제조등 완료시설확인일 사용완료사실확인일
3	관세법 제28조 4제1항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3년 3년	제조등완료일로부터 3년 제조등완료사실확인일
4	관세법 제28조의 5 해당물품 가. 시약, 시험지, 부분품, 원재료 및 견품 나. 고도기술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또는 디스크 다. 위 가, 나호 해당외의 물품	1년 수입면허일 1년	사용완료사실확인일 수입면허일 3년
5	관세법 제28조 6 제1항 가.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8호, 제14호 및 제16호 해당물품 나. 제4호 해당물품 (1)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해당물품 (2)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4호 해당물품 다. 제6호, 제7호, 제13호 및 제15호 해당물품 라. 제12호 해당물품	1년 1년 3년 수입면허일 1년(부분품은 3년)	3년 수입면허일 제조완료사실확인일 수입면허일 3년
6	관세법(제4027)부칙 제5조 해당 물품 가. 금 형 나. 가호 해당외의 물품	1년 1년	2년 3년
7	조세감면규제법 제83조 제1항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및 제3호 해당물품 다. 제4호 해당물품 (1) 상설전시관용 (2) (1)호 해당외의 물품	3년 3년 박람회종료일 박람회종료일	3년 제조완료사실확인일 2년 박람회종료일

關稅減免率 年 5%씩 축소

—下半月期 관세법改正 내년부터 施行 —

첨단산업·방위산업·선박엔진 및 항공기 부품등 產業別로 지원되는 關稅減免 지원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오는 '98년에 완전 폐지된다. 공장자동화·기술연구용품·공해방지시설·직업병예방용품 등 機能別로 지원되는 관세감면은 앞으로 계속 유지되나 대상품목이 차츰 줄어든다.

財務部는 이같은 내용의 新경제 5개년기간중 관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關稅法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첨단·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減免率도 줄일 계획이다.

첨단·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올연말로 적용시한이 끝나도록 명시돼 있으나 이를 '97년까지 연기하되 감면율을 금년 40%, '94년 35%, '95년 30%, '96년 25%등에 이어 오는 '97년 20%로 매년 5% 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또 감면품목은 현재 1,089품목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기술프로젝트 중심으로 선별해 첨단전략산업에 필요한 시설 재만 남기고 매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방위산업에 대한 관세감면제는 이같은 축소과정을 거쳐 오는 '98년에 완전 폐지된다.

또 산업별지원에 해당되는 선박용엔진(외항용)·항공기 제작 및 안전용품 등에 대한 지원도 대상품목 및 감면율을 축소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공장자동화물품(감면율 50%)·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80%)·직업병예방물품(80%)·공해방지시설(80%)등에 대한 지원은 신경제 5년기간중 지속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1차례씩 대상품목을 재검토해 지원필요성이 감소된 품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 지원된 관세감면액은 3,898억원으로 작년 관세稅入 3조1,532억원의 11%수준에 달했다.

▲ 主要 關稅減免制度 現況

減 免 種 類	減 免 對 象	關稅減免率	物品數	備 考
- 첨단기술산업·방위산업 (관세법 제28조)	정밀전자, 정밀기계, 신소재, 정밀화학, 생물, 광(光), 항공기, 방위산업의 설비물품	'91 : 60% '92 : 50% '93 : 40%	1,089 개물품	상 공 부 ('92. 9. 22고시)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법 제28조의 6①16호)	제조업, 광업의 컴퓨터 기술응용물품	50%	434개 물품	상 공 부, 동 자 부 ('92.11.16고시)
- 오염물질방지·폐기물 처리물품, 산업재해예방 물품(관세법 제28조의 6①6호, 6의2호, 6의3호)	폐수·폐유처리, 공기 오염·소음·진동방지, 탈황시설 및 폐기물 처리·재활용 물품	80%	88개 물품	환경처, 상 공 부, 노 동 부 ('91.5.10고시)
-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 (관세법 제28조의 5①9호)	기업의 신제품개발, 공정개선에 활용되는 물품	80%	원자재, 기자재 243개	과 기 치 ('93. 2. 5)
- 조감법				
◦ 지하철도건설용품	기자재 부분품	85%	207개	교 통 부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	65%	8개	농수산부 ('91.2.23)
◦ 태양에너지이용 기기 기자재	"	65%	5개	동 자 부
◦ 국제무역박람회 시설 용품	"	65%	-	상 공 부
◦ 의료법인용 첨단의료 기기	기 기	65%	-	보 사 부
- 기타 기자재 (외자도입법, 해저광물 자원개발법)	자본재	50%		재 무 부 동 자 부

中古品 수출입 추천기관 明示

—상공부, 수출입별도공고 改正고시—

상공자원부는 수출자유지역의 중고품 수입은 수출자유지역 관리소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출입별도공고증 개정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고시는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수출입공고상의 별도 공고조항 변동에 따라 조문정비를 위주로 개정한 것으로 일부품목의 수입 및 수출추천관장 단체를 명시, 업계의 불편이 없도록 했다.

주요품목별로는 “수출자유지역의 업체”가 수입하는 중고품은 관장품목별 단체가 아니라 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고 방위산업용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의 수입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방위산업용 원료 및 기재중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수입은 한국기계공업진흥회의 추천대상임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건설협회의 수출추천을 받도록 돼 있는 해외근로자용 일용품 및 식료품 중에서 안전모·위생용품·식탁 및 주방집기·보호용 안경등 4개품목을 7월 1일부터 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이들 품목이 7월1일부터 수출이 자유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별도공고증 북한과의 물품 수출입요령도 현재 ‘남북교역에 관한 특별법(90년 8월1일)’이 제정,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삭제했다.

乾電池, 무공해 제품만 流通허용

- 상공자원부는 공해방지를 위해 오는 10월경부터 수은이 1ppm이상 함유된 망간 및 알칼리건전지에 대해서는 판매 및 유통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해건전지의 국내생산은 물론 수입까지 금지되게 됐다.